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최 석 범*

〈목 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법률체계 및 국제상사분쟁의 현황
Ⅲ. 중국의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
Ⅳ.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분쟁처리현황 및 문제점
Ⅴ. 결 론-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개선방안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Ⅰ. 서 론

중국은 1978년부터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시행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1979년 합자경영기업법을 비롯하여 1981년 경제계약법, 1985년 섭외경제계약법 등 무역 및 경제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왔다. 특히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추진과 함께 많은 법령에 섭외사법적 규정을 두고 국내의 섭외중재기구를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무역 및 경제관련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중국에서의 섭외무역 및 경제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형태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각종법률의 규정에서 용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지만 사회주의적 법리에 따라 해석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구실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중국은 중국기업과 외국투자기업간의 분쟁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소재지중재나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분쟁해결분야에서도 상당한 정도 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의 상사중재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준조의 "중국의 섭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 사례"에서는 다양하게 관련 법률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고 신군재 · 김경배의 "중국기업과의 효율적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의 분쟁해결제도와 그 제도의 유용성을 비교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윤진기의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1]는 CIETAC의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 재정관할건과 중재전 보전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상

1) 윤진기,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pp.47-68.

기의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국제상사분쟁건수와 CIETAC의 분쟁처리 현황은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의 국제상사분쟁의 현황과 해결방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상사중재의 중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분쟁처리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CIETAC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여 중국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Ⅱ. 중국의 법률체계 및 국제상사분쟁의 현황

1. 중국의 섭외 경제무역관련 법률체계 및 향후 방향

(1) 중국의 섭외 경제무역관련 법률체계

섭외 경제무역관련법률 체계는 국내입법과 국제조약, 양국간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원칙규정

섭외 경제무역관련법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민법통칙, 계약법이다.

② 기본법

직접적인 섭외경제무역의 기본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외무역법, 해관법(세관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전액 외자기업법) 등이 있다.

③ 행정법규

섭외 경제무역기관에 관한 행정법규에는 예를 들어 "해양 석유자원

의 대외합작개발조례", "수출상품관리 잠정변법" 등이 있다.

④ 국제조약, 양국간 조약

1998년 말까지 180여개국과 양국간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90개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이 가입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국제조약, 양국간 조약은 다음의 범주에 해당된다.

a) 상무조약 또는 통상항해조약, b) 무역협정, 지급협정, c) 차관협정, 경제원조협정, 경제기술합작협정, d) 동맹조약 - 예를 들어,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국가 및 타국 공민과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이 있다.

⑤ 지방의 섭외 경제무역관련법규

중앙정부의 수권에 의해 각 지방정부가 당해 지방에서 적용하는 조례 등을 제정·공포하고 있다.

특히, 197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이 실시한 법률 정비의 내용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외자도입과 관련하여 법제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합자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하 "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 "섭외경제 계약법"(현재는 「계약법」으로 개정)이 그것이다. 또한 경제특별구,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설치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 WTO가입이후의 섭외 경제무역관련 법률의 방향

WTO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회 회의에서 합작기업법과 독자기업법의 개정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0년 11월 13일에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의 중국가입문제 작업부회 석상에서 중국이 각종법령의 개정대상과 개선시기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후에 중국의 법제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는데 2001년 3월에는 제휴기업법의 개정, 동년 7월

에는 동법의 실시조례가 개정되었다.

2001년 12월 WTO가입에 따른 대외개방의 의미는 섭외 경제무역관련법을 국제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특히 대외무역법 및 정부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국제조약도 중국의 섭외경제무역관련법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전술한 주요 법령들에 의거하여 중국은 현재 법제 환경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WTO 가입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며, WTO 가입국들로부터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향후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법으로 채권법, 경쟁법(독점금지법)이 있다. 또한 WTO가입에 따른 외자계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공여가 있으며, 현재의 삼자기업법이 "외상(外商)투자법"으로 통일되고, 외상투자법과 국내투자법이 통일되어 "투자법"이 제정된다. 이와 같이 WTO가입에 의해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있다.

2. 대중 사업전개의 형태와 대외무역관련기관

(1) 대중 사업전개의 형태

국제계약에는 일반적으로 ①무역, ②생산위탁, ③기술공여, ④지적소유권 사용허가, ⑤합작기업경영 등이 있다. 이를 중국의 분류기준에 따라 대외사업 전개의 형태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대중(對中)사업전개의 형태

무역형	일반무역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구상무역
	기술공여(노하우, 지적소유권 사용허가 등)	
	국제 리스	
직접투자형	합자경영기업(제휴기업, Equity Joint Venture)	
	합작경영기업(계약식 제휴기업, Contractual Joint Venture)	
	외자기업(독자기업, Wholly Owned Enterprise)	
	합작개발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합작부編, 「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통계출판사의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2) 대외무역정책기조 및 대외무역관련기관

1) 대외무역정책기조

중국의 서방 국가들과의 대외무역은 통제무역의 형태를 취하여 왔다. 통제무역이란 다음의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민간의 자유계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무역 전문기관이 무역의 창구가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양국간 무역협정에 의해 상기기관이 서방국가 기업들과 무역거래를 행하게 된다.

2) 대외무역관련기관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중국의 대외무역은 대외무역부 산하의 대외무역 전문기관인 국가수출입공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중앙집권하에서 추진되었으며, 무역기구로는 현재의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국가수출입공사만이 이를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부가 공동으로 책정하여 왔다.

정부기관인 대외무역부가 대외무역을 독점적으로 관할하였기 때문

에 외국기업과의 무역거래에 대해서도 대외경제무역부가 모델 계약서식을 작성하여 왔다. 모든 기업은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거의 강요당해 왔고 외국기업으로부터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도 이에 응해주지 않았으며, 만약 수정을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인가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림 1〉 중국의 대외무역관련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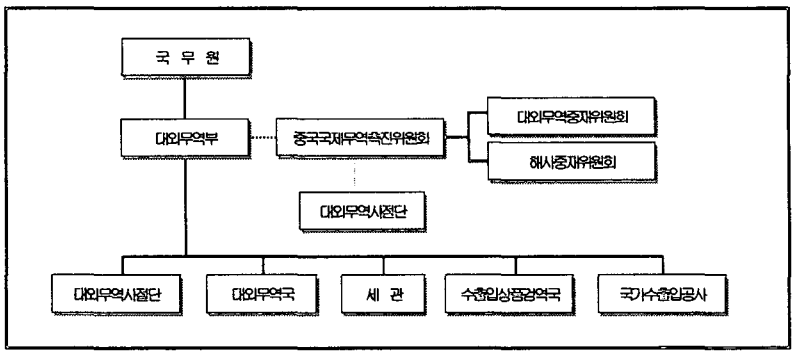

자료: KOTRA, 「2003-2004년판 중국비즈니스로드맵」, 2003.6의 자료를 참조하여 구성.

3. 국제상사분쟁의 현황

(1) 중국에서의 계약법의식

1) 중국에서의 계약의 개념

계약은 중국어로 "합동(合同)"이라고 한다. 계약은 광의의 의미로는 어떤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협의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의미는 각 당사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민사법률 관계를 형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협의이다. 자본주의 자유경제국가에서는 민사법률관

계는 각 주체간에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형성된다. 계약은 각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하여 체결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종래에는 중국에서 계획경제를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스타일의 법제 및 운용방식을 모방하게 되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에 가입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이 규정되게 되었다. 단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당연히 사유재산의 범위도 자본주의 자유경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계약에 관한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의 주요 쟁점은 계약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①평등·자유, ②공평·성실·신용, ③도덕·사회공공이익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개념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2) 중국에서의 계약의식

중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들에 대해서 외국기업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중국기업의 계약의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국에 공지하는 내용과 실제로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협정서나 합의문서의 정본을 영문과 중문으로 2통씩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중문으로 된 정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치는 경향이 있다.[2)]

그리고 공식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섭과정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서명된 합의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상호이익을 명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3)]

---

2) 船橋洋一, "世界ブリーフインダ", 『週刊朝日』, 1992.6.12.
3) 園田茂人 驛, 『中國人の 交涉スタイル』, 大修館書店, 1993, pp.159-160

(2) 국제상사분쟁의 현황

1) 중국내에서의 경제사건 처리건수

2003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일본의 국회에 해당함) 석상에서 최고인민법원(최고 재판소)의 활동보고가 샤오양(肖揚)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표 2〉 중국의 경제사건 처리건수

구분	내용	1988~2002	전 5년간 대비 성장률
인민법원 (수리건수)	시장경제질서 사건(모조품, 밀수, 탈세, 위폐 등)	71,213	68%
	상사사건 (기업재편, 파산, 매매, 금융, 리스 등)	6,7000,000	9%
	지적소유권 사건	23,636	40%
	섭외경제사건	26,399	17%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국제상사중재 수리건수	3,395	-9%
	결심수	3,586	8.5%

자료: 梶田 幸雄, "WTO加入後中の中國-國際商事紛爭處理(1)裁判",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59, 2004.5, p.6.

동 보고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전국 법원이 수리한 섭외사건은 2만 6,399건으로 연평균 4%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 수리건수는 3,395 건이었다. 이 중에서 인민법원이 수리한 섭외경제사건의 과거 동향을 살펴보면 1993년에는 1,311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2만 6,399건으로 20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Ⅲ. 중국의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

1. 개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상사분쟁의 해결은 재판과 재판외분쟁처리 방법의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재판외 분쟁처리법으로는 조정과 중재를 들 수 있다.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발표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 중재위원회판안규익을 체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다.[4] 국제상사중재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규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과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이 있다.[5]

2. 재판

(1) 법원의 개요

중국에서의 현행 재판제도는 인민법원조직법[6]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중국의 법원구조는 최하층법원인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나누어지고 2심이 종심으로 4급 2심제구조를 취하고 있다.[7] 특히 무역분쟁을 다루는 섭외사건은 중급인

4) 王紅松, "중국중재제도",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p.28.
5) 윤진기, 『중국중재제도』,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p.75.
6) 1979년 7월 5일 공포되어, 1980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1983년 9월 2일에 개정되었다.
7) 신군재·김경배, "중국기업과의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p.269.

민법원이 1심법원이 되며 분쟁금액이 크고 중대사건인 경우에는 고급법원이 1심법원이 될 수 있다.[8]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중국의 법원 및 관할

구분	관할지역	심급관할			관할 사건
최고 인민법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각급법원 중 최고의 심급에 해당			2심	· 사법 해석 · 외국법의 내용 확인
고급 인민법원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고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중간급법원에 해당		2심	1심	· 본관할구에서 중대 영향이 있는 1심 민사사건
중급 인민법원	지(구), 시, 맹, 자치주에 설치되어 있고 기층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의 중간급법원에 해당	2심	1심		· 섭외사건 · 본관할구에서 중대 영향이 있는 사건 ·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에 관할하게 한 사건
기층 인민법원	현, 시, 기, 자치현에 설치되어 있고 최하급법원에 해당	1심			· 일반사건으로서 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1심사건

자료: 신군재·김경배, "중국기업과의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p.271; 한국수출보험공사, "무역분쟁 사례를 통한 몇가지 중국민사법률소개", 『수출보험』, 2003년 3-4월호, 2003, p.31를 참조하여 재작성.

인민법원 조직도는 <그림 2>와 같다.

8) 한국수출보험공사, "무역분쟁 사례를 통한 몇가지 중국민사법률소개", 『수출보험』, 2003년 3-4월호, 2003, p.30.

〈그림 2〉 인민법원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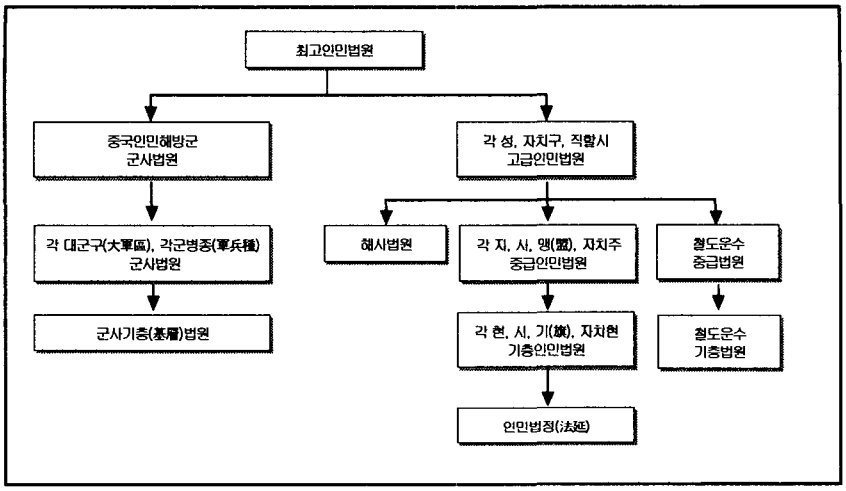

주: 맹과 기는 특정소수민족지역의 행정단위로서 맹은 시에 해당되는 단위이고 기는 현에 해당되는 단위임.
자료: 최고인민법원 판공청(辦公廳) 자료

(2) 민사소송제도

1) 섭외민사소송의 요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섭외사건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9]은 제4편에 섭외민사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섭외사건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소송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단체이여야 한다. 두 번째로 민사법률관계의 발생·변화를 유발하거나, 소멸시키는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여기에는 당사자가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 쌍방간의 민사관계가 발생·변화 및 소멸하였다는 법률사실이 중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존재하는 경

9) 1991년 4월 9일 공포, 동일 시행되었음.

우에도 포함된다. 세 번째로 소송당사자의 계쟁(係爭)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이다. 또는 당사자가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계쟁재산이 중국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2) 관할

섭외사건의 경우에는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을 관할한다.[10] 인민법원이 취급하는 경제사건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분쟁 중에 제휴기업과 중국의 국유기업 등과의 거래를 둘러싼 분쟁이나 제휴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섭외사건에는 제휴기업 파트너와의 분쟁이나 제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서 중외합자기업계약, 중외합작기업계약, 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계약의 이행에 기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제기된 소송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11]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의 인민법원이란 섭외사건이므로 중급인민법원을 의미한다.

3) 소송절차의 일반원칙

소송절차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원칙
② 동등원칙
③ 대등원칙
④ 재판관할면제권의 원칙
⑤ 관련성이 있는 국제조약을 적용하는 원칙
⑥ 중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적용하는 원칙
⑦ 소송의 대리인을 중국 변호사에게 위탁하는 원칙

4) 송달

송달 방법은 송달을 받는 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① 중국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송달

10) 중국 인민법원조직법 19조.
11) 중국 민사소송법 246조.

당사자가 중국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7장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다. 즉, 소송문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송달해야 하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 대표자, 기타 단체의 주책임자 또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서류수취 책임자가 서명하고 수취해야 한다.[12] 소송서류의 직접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대리 송달시키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13]

② 중국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송달[14]

중국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송달은 다음의 6가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송달을 받아야하는 자의 소재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한다.

둘째, 외교루트를 통해 송달한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그 소재국의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송달한다.

넷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또는 송달을 받을 권한을 갖는 지사 또는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다섯째, 당사자의 소재국의 법률이 우편에 의한 송달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여섯째, 공시 송달한다.

5) 답변서의 제출

피고인이 중국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15]

---

12) 중국민사소송법 78조.
13) 중국민사소송법 80조.
14) 중국민사소송법 247조.
15) 중국민사소송법 247조

6) 공판절차에서 상소, 판결확정, 강제집행까지의 소송절차의 흐름

분쟁의 발생에서부터 판결확정, 나아가 강제집행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분쟁의 발생에서 소장제출, 답변서제출, 구두변론후에 조정절차에 따라 화해가 권고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서가 송달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그림 3〉 소송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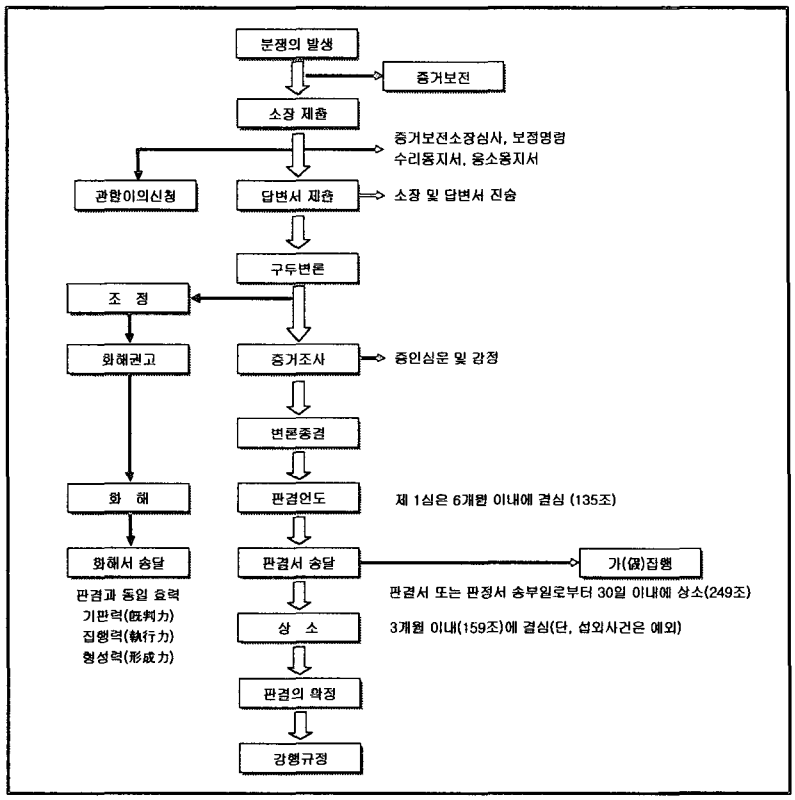

자료: 梶田 幸雄, "WTO加入後中の中國-國際商事紛爭處理(1)裁判", 前揭書, p.7.

3. 재판외 분쟁해결방법

(1) 조정

1) 조정의 개념

우리나라의 조정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중국의 용어는 조해((調解)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그 정의를 살펴보면 조해라는 용어가 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중국대백과사전에서는 조해를 "쌍방 또는 다수당사자 간에 발생한 민사권익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법정, 단체조해기관이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정 또는 단체조해기관이 알선을 통하여 설득 및 교육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6] 그리고 중국에서 말하는 조정은 "국제투자분쟁의 처리에 관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는 정부에 의한 정치적 해결방법의 하나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17] 이러한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본 논문에서는 조해를 조정으로 간주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조정기관

① 중국 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 국제상회조정센터

외국기업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기관이 중국 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 국제상회조정센터이다. 동 조정센터는 1987년에 북경에 설립되었다. 중국 전국 주요도시인 江蘇, 南京, 天津, 廣東, 遼寧, 하얼빈, 上海, 四川, 浦東, 山東, 浙江, 武漢, 厦門, 重慶 등에 약 34개 분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정인으로는 경제, 무역, 금융, 증권, 투자, 지적소유권, 기술이전, 부동산, 공사수주, 운송, 보험 등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 55명(2003년 8월 현재)이 등록되어 있다.

16)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中國大百科事典』, 1984, p.589.
17) 전게서, p.236.

1999년말까지 2,000건 이상의 조정사안이 수리되었다. 분쟁당사자는 30개 국가 및 지역에 달한다. 동 조정센터에 따르면 신청된 조정사건 중 80% 이상이 성공리에 해결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양국간의 중재기관에서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조정을 실시하려는 움직임도 종종 보인다. 이는 연합조정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980년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프랑스 공업소유권국과 중불(中佛) 공업소유권 무역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고, 이러한 종류의 연합조정방식을 발전시킨다는데 합의하였다. 이 의정서의 내용은 중·불간 공업소유권 무역분쟁에 관해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프랑스 공업소유권국이 각각 선정한 인원으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1981년 5월에는 중국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이탈리아 중재협회와 "중재협력에 관한 각서"에 관하여 조인하였다.

1987년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북경조정센터가 북경에서 성립되었고, 독일의 북경·함부르그 조정센터가 함부르그에서 설립되어 쌍방은 1987년 5월 연합조정에 관한 협력약정에 대하여 조인하였다. 쌍방은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북경·함부르그 조정규칙을 제정했다. 동 규칙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조정규칙을 수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조정절차

조정은 각 조종기관의 규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중국 국제상회 조정센터의 조정규칙에 의거한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조정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중재 또는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조정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이 조정인을 지명하고 피신청인도 조정인을 지명하게 된다.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조직되고 조정판정이 이루어지는데 조정과정중에 화해권고가 이루어진다.

〈그림 4〉 조정절차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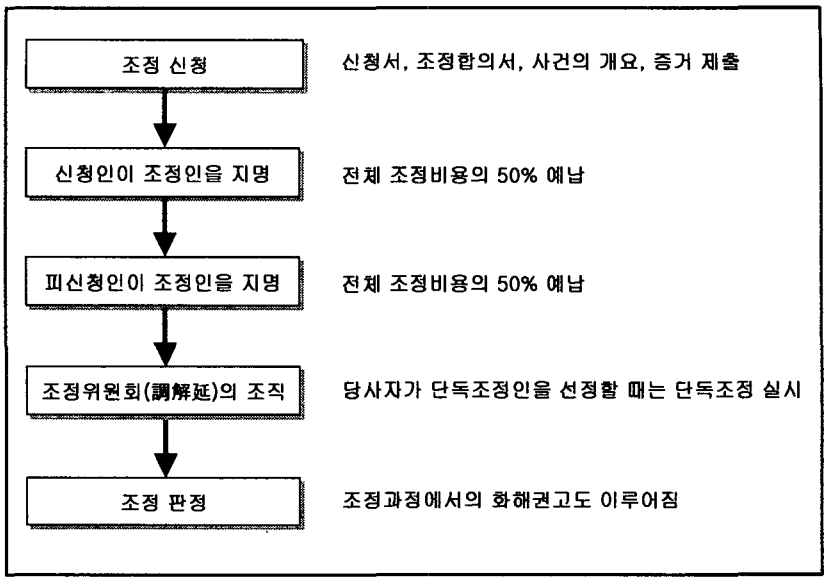

자료: 梶田 幸雄, "WTO加入後中の中國-國際商事紛爭處理(2)調停",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60, 2004.7, p.7.

3) 민사소송에서의 조정

중국 민사소송법에서 조정을 우선하는 규정[18]이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조정 전치(前置)주의라 한다. 즉,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시비를 명확히 가린 후에 조정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조정은 재판관 1명이 주재하거나 합의정(合議廷)에 따르고[20] 이 경우 법원은 관계단위 및 개인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단위 및 개인은 이에 협력해야 하고[21] 조정이 합의에 도달했을 경

18) 중국 민사소송법 제8장 85조-91조.
19) 중국 민사소송법 85조.
20) 중국 민사소송법 86조.
21) 중국 민사소송법 87조

우에는 법원은 화해서를 작성하고 재판관 및 서기관이 서명하며, 법원이 압인(押印)하여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22] 조정에 의해서도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23]

4) 중재과정에서의 조정

CIETAC중재규칙에서도 조정을 우선하는 규정이 있다.[24] 중재절차 과정에서 조정을 행하는 이유는 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화(和)를 중요시 하는" 처세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CIETAC는 중재와 조정을 연결짓는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조정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략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조정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25]

CIETAC중재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쌍방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또는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고 중재판정부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과정에서 그 심리사안에 대해 조정을 행할 수 있고[26] 중재판정부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조정을 행할 수 있다.[27]

쌍방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는 경우나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여 중재판정부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과정에서 그 심리사안에 대하여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조정의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조정의 종결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조정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조정을 정지해야 한다.[28]

---

22) 중국 민사소송법 89조.
23) 중국 민사소송법 91조
24) CIETAC 중재규칙 45조부터 50조.
25) 任建新, "中華人民共和國的調解, 仲裁以及訴訟," 「人民法院公報」, 1987.6.20.
26) CIETAC 중재규칙 45조.
27) CIETAC 중재규칙 46조
28) CIETAC 중재규칙 47조

중재판정부의 조정과정 중에 화해도 가능하다. 중재판정부는 조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 밖에서 화해했을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조정에 의해 화해에 도달했다고 인정한다.[29] 중재판정부의 조정에 따라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는 서면의 화해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별도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화해합의 내용에 입각하여 판정서를 작성해야 한다.[30]

(2) 국제상사중재

1) 국제상사중재의 정의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란 분쟁당사자가 해당 당사자간의 섭외적 요소가 있는 계약성 및 비계약성 상사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을 중국의 국제상사중재기관에 신청하여 당해기관이 분쟁의 시비를 판정하여 재정(裁定)하는 것이다.[31]

이 개념설명에서 '분쟁당사자'로는 (1)중국 내자(內資)기업, 외국기업 이외에, (2)중국에 설립된 외자계 기업(중외 합작기업 포함), (3)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의 기업이 있다.

'섭외적 요소'란 주체, 객체, 내용 중 어느 한가지에 대하여 중국 본토 밖의 법역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계약성 및 비계약성'이란 계약, 권리침해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경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상사법률관계'란 예를 들어 화물매매, 재산리스, 공사하청, 위탁가공, 기술공여, 합자경영, 합작경영,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보험, 신용, 노무, 대리, 컨설팅 및 해상·민간항공·철도·도로를 통한 화물운송과 제품품질, 환경오염, 해상사고 및 소유권과 관련된 관계를 말한다.

---

29) CIETAC 중재규칙 48조,
30) CIETAC 중재규칙 49조.
31) CIETAC 중재규칙 2조.

2) 중재기관

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ⅰ) CIETAC의 설립배경

섭외중재기관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가 1956년에 설립되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1980년에 개칭되었다가 1988년 6월 21일에 국무원에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ⅱ) CIETAC의 조직도

CIETAC은 정부기관에서 독립한 민간단체인데 1989년 2월에 CIETAC는 독자적인 정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비록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감독은 받지만, 정부기관으로부터는 독립된 민간단체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1989년에 채택된 CIETAC정관에 따르면 CIETAC의 설립목적은 국제경제무역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32] CIETAC위원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중국내 각 방면에서 초빙한 저명인사가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33] CIETAC의 내부조직에는 주석 1명, 부주석 약간명 비서장 1명, 부비서장 약간명을 두고 주석, 부주석 및 비서장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지명한다.[34]

CIETAC의 권한의 경우 먼저 CIETAC비서처가 일상적인 사무에 책임을 지는데 일상적인 사무에는 사안의 접수, 중재비용의 징수, 중재절차의 관리, 사안의 조정이 있다.[35] 중재인은 비서처의 지명에 따라 CIETAC 주석회의가 심의하고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임명한다.

32) 1989년 CIETAC정관 1조.
33) 1989년 CIETAC정관 2조.
34) 1989년 CIETAC정관 5조.
35) 1989년 CIETAC정관 7조.

<그림 5> CIETAC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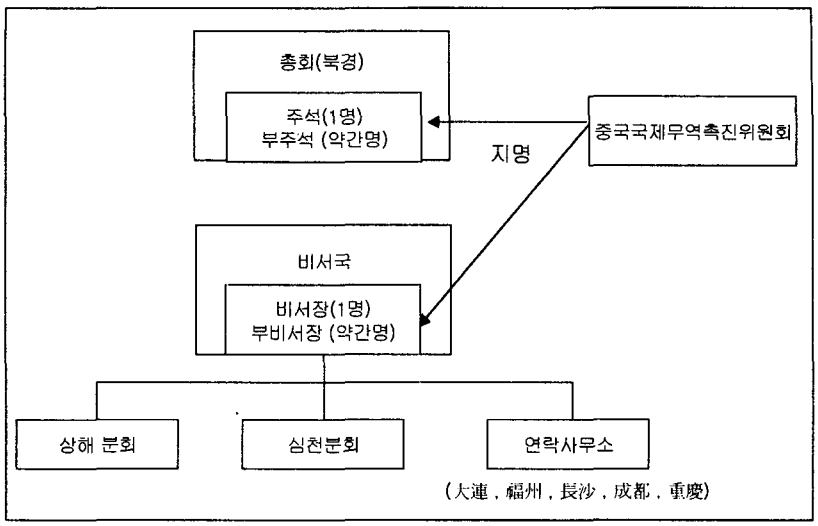

그리고 CIETAC정관은 1993년 5월 및 1999년 2월에 개정되었다. 본 개정은 CIETAC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쟁접수범위의 확대, 접수건수의 증대에 따라 조직의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CIETAC정관에 기재된 설치목적, 사안접수범위에 관해서는 중재규칙의 개정내용과 일치한다.

iii) CIETAC의 분쟁처리절차

CIETAC의 분쟁처리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CIETAC에 의한 분쟁은 간이절차와 보통절차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간이절차는 금액이 50만위안이하의 사안인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당사자 쌍방은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수령한 후 15일이내에 1명의 단독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지정위탁한다. 피신청인은 30일이내에 답변 또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개정심리나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개정심리는 30일이내에, 서면심리는 중재판정부 개정후 90일이내에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조직후 9개월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림 6> CIETAC의 분쟁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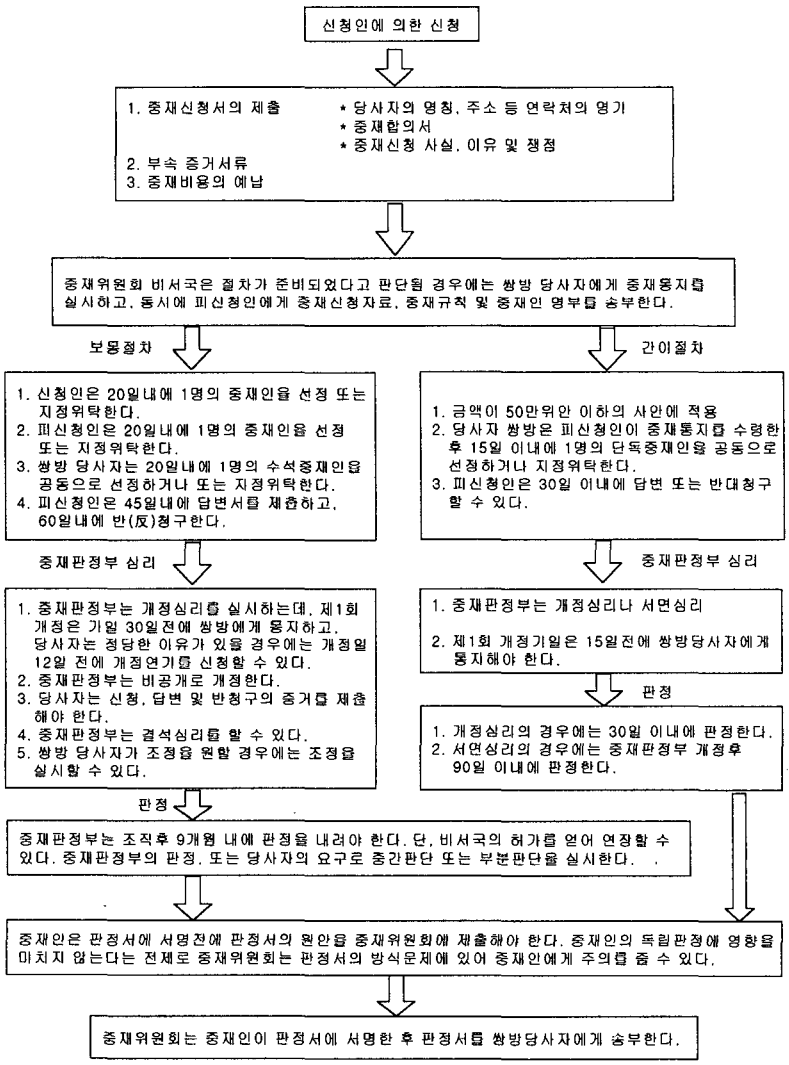

자료: 梶田 幸雄, "WTO加入後中の中國-國際商事紛爭處理(3)仲裁",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61, 2004.9, p.7.

② 해사중재위원회(CMAC)

중국에서 해사분쟁을 처리하는 중재기구는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인데 원래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에 설립된 2개의 중재기구의 하나였다. 해사중재위원회는 1959년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해사중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운송, 대외무역, 금융, 해상보험, 해상구조 등 각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해상법, 국제법, 해양법, 국제사법, 민법 등의 전문지식을 구비한 법률계 인사로 구성되었다.

해사중재위원회는 1988년 8월 12일부터 중국해사중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사중재위원회는 섭외해사사건만을 수리하고 있다. 해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은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사건의 수리범위)과 부칙의 중재비용표를 제외하고는 CIETAC의 중재규칙과 동일하다.[36]

Ⅳ.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분쟁처리현황 및 문제점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분쟁처리현황

(1) CIETAC의 분쟁처리건수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부탁되는 분쟁처리 사례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36) 문준조, 「중국의 섭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 사례(중국법연구(Ⅳ)」, 연구보고 95-9, 한국법제연구원, 1995, pp.150-151.

〈표 4〉 CIETAC의 분쟁수리·처리현황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전체													
수리수	238	274	267	486	829	902	778	723	678	669	633	731	684
결심수	-	205	236	294	574	875	797	764	736	706	738	712	694
판정	-	109	60%	109	-	519	636	606	590	546	-	-	-
화해	-	20	13%	24	-	45	48	41	45	51	-	-	-
취소	-	34	27%	41	-	64	113	117	105	109	-	-	-
북경													
수리수	230	211	203	389	600	660	543	490	451	428	410	420	401
결심수	-	163	160	217	430	628	569	558	508	365	493	429	408
상해													
수리수	8	10	15	40	88	88	88	110	111	130	123	173	174
결심수	-	5	8	21	57	89	77	85	110	78	127	147	175
심천													
수리수	-	53	49	57	141	146	147	123	123	111	100	138	109
결심수	-	37	68	56	87	158	151	121	118	103	118	136	111

(주) 공란은 자료입수 불가.

자료: 梶田 幸雄, "中國における紛爭解決法(前編)",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48, 2002.7, p.11. 2002년 자료는 CIETAC 내부자료 이용.

중국의 대외개방에 따라 국제상사분쟁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7]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양자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38] 대외경제무역관계의 증가에 비례하여 CIETAC에 의한 중재사안의 수리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 CIETAC에 의한 분쟁처리건수는 61건에 불과하였으나 이 수치는 급증하여 2002년 CIETAC이 수리한 사안수는 684건에 이르고 있다.

37) 梶田 幸雄, "中國における紛爭解決法(前編)",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48, 2002.7, p.11.

38) Stanley B. Lubman & Gregory C. Wajonwski,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in China," 「The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4, No.2, 1993, p.107.

(2) 분쟁의 사유

2001년의 경우 분쟁의 내용으로는 제휴·합작관계에서 발생된 분쟁과 일반화물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융자, 리스, 건축, 공사, 증권, 부동산, 대리 및 보상무역·위탁가공무역이 48%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특징은 입찰, 광고, 보험, 노동분쟁, 업무위탁관리 등에 관한 분쟁의 중재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39]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에 따라 일반무역 이외의 거래형태, 특히 합작기업의 설립 등 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02년의 경우 일반화물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275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작기업에 관련된 분쟁이 192건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분쟁사유의 내용이 점점 더 복잡하고 난해해지고 있는데 특히 제휴나 보상무역계약 등에 관한 안건의 경우 처리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다.[40]

2002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그 내용이 광범위한 것으로 제휴기업이 해산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이외에 청산위원회 등의 관계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분쟁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이외에 이러한 관계를 규율할 법률상에 규정이 없다거나, 규정이 명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약책임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39) 梶田 幸雄, 前揭書, p.11.
40) 王長生, "中國 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第14屆委員會 工作報告", 「仲裁与法律」, 2001.2, p.7.

〈표 5〉 CIETAC의 수리사안 내용

내 용	90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	%	건수	%	%	건수						%
일반화물의 수출입	40	47	113	29		396	427	387	219	326	135	
브랜드, 설비도입	23	10	45	11.5								50
원재료(약품 포함) 무역	20	15	91	23.4								
직접투자(합병 등) 관련	8	19	111	28.5	48.3	187	259	245	225	211	185	
생산위탁	6	2	7			7						
건축			3				92	132	234	142	303	
기타 (리스, 보험 등)	3	7	19									

(주) 93년과 95년의 수치는 북경 자료만 집계한 것이고 공란은 자료입수 불가.
자료: 梶田 幸雄, 前揭書, p.12. 2001년자료는 CIETAC 내부자료.

제휴기업에 관한 분쟁의 경우, (1)출자에 관한 분쟁, (2) 경영관리에 관한 분쟁 및 (3)중재기관과 회사의 청산판단에 관한 문제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한다. 첫번째로 출자의 경우에는 출자액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분쟁에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국측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나 외국측으로부터 평가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등이다. 또한 외국투자자의 출자도 이것이 설비나 기술인 경우,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당해기관에 의한 감정결과 외국측에서 신고한 평가액과 감정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경영관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중외(中外) 당사자의 합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휴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간섭 등의 문제가 있다.

세번째로 중재기관과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될 수 있다. 외국투자자 투자기업의 청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에 회부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중재에 회부되더라도 문제가 반드시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

(3) 분쟁당사자

2001년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40여개 국가·지역에 달하고 있고 홍콩 특별행정구가 278건 (38%), 미국 65건 (9%)이 특히 많고, 그뒤로 싱가포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독일, 캐나다, 영국, 스위스, 러시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순이다. 2002년에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199건, 미국 57건, 일본 29건, 한국 21건, 영국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1]

2. 분쟁처리상의 문제점

(1) 관할대상의 협소

중국의 중재사업에 존재하는 주된 문제가 관할대상이 너무 좁다는 것이 문제이다.[42] 즉, CIETAC중재규칙 2조는 중재사항에 관해서 "국제 또는 섭외의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의 경제무역의 분쟁"이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는 지적소유권 자체의 유효성, 부정경쟁 및 독점에 관한 문제의 분쟁에 관해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별도 분쟁처리의 규정이 있다. 특허법[43] 5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특허를 실시하고 그 특허권을 침

41) 梶田 幸雄, "中國における紛爭解決法(前編)", 前揭書, p.12.
42) 梶田 幸雄, "中國における紛爭解決法(後編)",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49, 2002.9, p.2.
43) 1984년 3월 채택, 1992년 9월 제1회 개정, 2000년 8월 25일 개정, 2001년 7월 1일 시행되고 있음.

해해서 분쟁을 일으킨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가 조정되지 않을 때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허사무의 관리관청에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규정에서는 특허관계의 분쟁처리는 법원 또는 특허사무 관리관청의 전관(專管)사항이기 때문에 CIETAC에서 관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특허의 유효성 관련 분쟁은 상사중재의 대상이 아니지만 중재범위차원에서는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방경제에 불이익이 되는 집행에 대한 지방법원의 기피

지방법원이 지방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판정에 대하여 그 집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이행당사자의 은행구좌를 동결하려고 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관할법원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44]

(3) 중재기구와 법원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중재집행의 곤란

중재기구와 중국법원사이의 협조체제가 크게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의 미흡으로 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중재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일단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분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판정의 집행도 법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법원의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의 판정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성의없이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중재판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

44) 王存學, 「中國涉外仲裁和訴訟費用手冊」, 中國發展出版社, 1993, p.322.

(4) 집행을 위한 법원의 인원부족과 자금부족

법원의 인원부족 및 자금 부족으로 중재를 집행하기 위한 직원의 출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인민법원 특히 집행법원의 심각한 인원부족과 자금부족은 집행신청지 법원의 직원이 불이행당사자 소재지 법원에 출장가서 집행을 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파견이 지연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청구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45]

(5) 법관의 자질과 능력 부족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법관은 퇴역군인, 법학전공자 및 기타의 자로 구성되어 있어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서방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고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고 윤리의식도 부족하다.[46]

(6) 단기의 집행신청기간

집행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신청기간을 쌍방 또는 일방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년,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짧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집행신청전에 판정불이행측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이행지연 또는 교섭기간연장 등으로 인하여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중재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연방법원에 확인명령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확인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다.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의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3년

45) 전게서, p.461.
46) 신군재·김경배, 전게서, p.281.

이내에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의 확인명령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뉴욕협약상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47]

(7) 국영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의 곤란

국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은 거의 다 국영기업이므로 외국기업과 중국의 국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 또는 재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중국내에서 국영기업에 대하여 그 집행에는 많은 법적 제한이 있다.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국가로부터 경영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뿐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집행이 매우 곤란하다.[48]

(8) 각종서류요건 문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당사자인지 또는 법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타방체약국의 관할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때에는 각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송달회송증빙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조서가 피집행인에게 송부된 바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

47) 미국연방중재법 제207조.

48) Howard Chao and Yang Xiaoping, "Reforms of the Chines System of Enterprise Ownership,"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5, 1988, pp.366-377.

V. 결 론 -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CIETAC에서의 중재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과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CIETAC의 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CIETAC의 중재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제상사중재활동에 있어서 지적소유권분쟁, 기업거래에 있어서의 부정경쟁 및 독점행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들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권리침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중재관할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이러한 부류의 분쟁도 중재방식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82년의 「수정법령」에 있어서 특허권의 유효성 및 특허권 침해 또는 특허권의 어떠한 권리로부터 발생한 분쟁도 중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WTO의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1조 제1항은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또 무역에 관한 지적소유권협정(TRIPs)에 있어서도 상기 분쟁을 중재사항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맹함으로 인해 지적소유권확보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CIETAC도 이러한 부류의 분쟁을 스스로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적소유권 분쟁에 관한 관할 범위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도메인과 더불어 상표 및 상호에 관한 분쟁이 많아졌다. CIETAC은 2001년 12월 18일에 홍콩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아시아 · 도메인 분쟁해결 센터"를 설립하였

다. 이것은 미국의 CPR 분쟁해결 센터(the Center for Public Resource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국가중재포럼 (National Arbitration Forum) 및 주네브의 "WIPO중재 · 조정센터"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의 도메인 분쟁해결 센터이다. 이러한 점에서 CIETAC의 중재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법관 및 중재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자질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도덕교육, 공정함의 확보, 효율화 등이 중요하다. 물론 중재인 명부에 외국국적(홍콩, 마카오, 대만국적을 포함)의 중재인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외국국적 중재인이 중재정의 입안이나 계획에 참가함으로써 중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대외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CIETAC은 외국의 중재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중재기술교류 및 협력관계의 구축도 활발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 함부르크 조정센터, 대만 · 해협양안상무협조회, 프랑스 전국공업소유권국, 이탈리아 중재협회,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홍콩 국제중재센터, 스페인 상공회의소 중재원 등과 같은 기관에서 협력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다. 국제연합무역법 위원회와의 교류, 영국 등 여러 외국의 중재기관과의 교류, 국제 심포지움의 참가 등도 활발하다. ICC, 미국, 홍콩, 대만, 독일, 프랑스와의 교류도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중재기술의 향상과 각각의 중재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IETAC은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재제도에 관해서 외국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류를 심화해서 CIETAC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중재에 관한 법원의 이해를 얻고 협력체재를 구축하여야 한다. CIETAC은 중재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IETAC에 대한 중재신청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즉, CIETAC에 있어서의 중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구조 및 중재판단의 종국성에 관한 법원의 이해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중재판정을 집행할 때에 지방법원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방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재판단의 집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CIETAC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중재판정이 집행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CIETAC에서의 중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CIETAC는 법원과의 의견교환, 정보교환 등의 교류를 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내부에 있어서 중재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문준조, 「중국의 섭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 사례(중국법연구(Ⅳ)」, 연구보고 95-9, 한국법제연구원, 1995.

윤진기, 『중국중재제도』,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_____,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梶田 幸雄, "中國における紛爭解決法(前編)",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48, 2002.7.

_____, "中國における紛爭解決法(後編)",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49, 2002.9.

_____, "WTO加入後中の中國-國際商事紛爭處理(1)裁判",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59, 2004.5.

_____, "WTO加入後中の中國-國際商事紛爭處理(2)調停",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60, 2004.7.

_____, "WTO加入後中の中國-國際商事紛爭處理(3)仲裁", 「環日本海貿易ジャーナル」, No.61, 2004.9.

船橋洋一, "世界ブリーフイング", 「週刊朝日」, 1992.6.12.

王長生, "中國 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第14屆委員會工作報告", 「仲裁与法律」, 2001.2.

王存學, 「中國涉外仲裁和訴訟費用手冊」, 中國發展出版社, 1993.

王紅松, "중국중재제도",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園田茂人 驛, 「中國人の 交涉スタイル」, 大修館書店, 1993.

任建新, "中華人民共和國的調解, 仲裁以及訴訟," 「人民法院公報」, 1987.6.20.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中國大百科事典」, 1984.

Chao, Howard and Yang Xiaoping, "Reforms of the Chines System of Enterprise Ownership,"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5, 1988.

Lubman, Stanley B., & Gregory C. Wajonwski,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in China," 「The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4, No.2, 1993.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Seok-Beom Choi

While doing business in China foreign companies occasionally find themselves embroiled in disputes with Chinese individuals, companies or the Chinese Government. There are three primary ways to resolve a commercial dispute in China are negot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he best way of dispute resolution is negotiation as it is the least expensive method and the working relationship of both parties concerned in dispute. But negotiations do not always give rise to resolution.

Arbitration is the next choice. Unless the parties concerned can agree to resort to arbitration after the dispute has arisen, the underlying contract namely, sales contract or separate agreement must show that disputes wi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Agreements to arbitration specify arbitration body and governing law.

There are two Chinese government-sponsored arbitration bodies for handling cases involving at least one foreign party: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and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CMAC) for maritime disputes. Contracts regarding foreig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China often designate CIETAC arbitration. CIETAC distinguishes between two kinds

of dispute resolutions, foreign-related arbitration and domestic arbitration. For a dispute to be classified as foreign-related arbitration, one of the companies must be a foreign entity without a major production facility or investment in China.

CIETAC has published rules which govern the selection of a panel if the contract does not specify how the choice of arbitration will be handled. CIETAC's list of arbitrators for foreign-related disputes, from which CIETAC's arbitrators must en chosen, includes may non-Chines arbitrators. But many foreign experts believe that some aspects of CIETAC needs to be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in China, CIETAC by way of study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Key words: CIETAC, Commercial Arbitration, China, Dispute Resolution